

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0. 9. 1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20년 8월 21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8월 24일

라. 상정일자 : 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0. 8. 3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정지원국장 이형삼)

가. 제안이유

- (재)영등포문화재단의 사업에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조항을 명시하여
우리 구 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문화예술진흥에 앞장서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‘문화예술시설의 운영 및 관리’ 신설(안 제4조제1항제6호)
- 법률 위임 근거 없는 ‘공유재산 무상 사용’ 조항 삭제(안 제16조제2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- 본 개정 조례안은 변화하는 문화 환경과 증가하는 지역 문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예술분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재단의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4조(재단의 사업) 제1항제6호에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추가함. 이는 2020년 9월 문래종합예술센터(도림로 133길 15, 문래동2가)가 준공 예정이고, 2021년 3월에 예술교육센터(양평동4가 172-1, 舊양평2동주민센터)가 개관 예정으로 우리 구 문화예술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「지방출자출연법」 제4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단의 사업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 - 안 제16조제2항의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함. 이는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, 위 내용은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재단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내용으로 위임범위 이탈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삭제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.
- 검토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의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우리 구 문화예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인 문화예술 정책 추진 및 수요자 중심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, 상위법령 저촉 사항이나 자구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50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0. 8. .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영등포문화재단의 사업 범위에 “문화예술시설의 운영 및 관리” 조항을 신설하여 재단의 전문성 향상과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며, 법률의 위임없이 재단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규정한 제16조제2항을 삭제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재단의 사업에 “문화예술시설의 운영 및 관리” 조항 신설(안 제4조제1항)
- 나.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조항 삭제 (안 제16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문화예술진흥법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- 2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- 3) 인권영향평가: 인권침해 가능성 없음
- 4) 성별영향평가: 의견없음

라. 입법예고(2020. 7. 23. ~ 8. 12. / 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및 관리

제16조(공유재산의 대부 등)제2항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재단의 사업) ①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 6. (생략) ② (생략)	제4조(재단의 사업) ①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<u>6.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및 관리</u> 7. (현행 제6호와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16조(공유재산의 대부 등) ① (생략) <u>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.</u>	제16조(공유재산의 대부 등) ①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